

##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131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9년 1월 일  
제 출 자 : 제 천 시 장

### 1. 제안이유

-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교통체험 교육을 통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- 교통공원의 기능(안 제3조)
- 교통공원의 시설관리(안 제4조)
- 운영시간(안 제5조)
- 관리 및 운영(안 제9조)
- 위탁의 해지(안 제11조)

3. 의안전문 : 불 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: 불 임(지방자치법,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, 교통안전법)

- 첨 부 : 1. 의안전문 1부.  
2. 관련법령 1부.  
3.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.

##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위치)**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(이하 “교통공원”이라 한다)은 제천시 도서관길 92(장락동 672-8)에 둔다.

**제3조(기능)** 교통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
2.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홍보
3. 기타 교통공원 프로그램 개발

**제4조(시설관리)** 제천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관리한다.

1. 실내교육시설 : 교육용 빔프로젝트, 스크린, 방송장비 등
2. 실외교육시설 : 모형자동차, 모형철길, 신호기, 교통안전표지 등
3. 휴게시설 : 정자, 파고라, 음수대, 등의자, 관상수 등
4. 기타 : 관리사무실, 창고 등

**제5조(운영시간 등)** ① 교통공원의 운영시간은 09:00~18:00까지로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교통공원 시설의 유지·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정기 또는 임시 휴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6조(사용료 등)** 교통공원의 사용료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료

는 무료로 한다.

**제7조(사용신청 및 허가)** ① 교통공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시장에게 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개인사용에 대하여는 제5조의 사용시간 내에 상시 개방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 사용신청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일시, 사용단체명, 사용인원, 연락처 등을 내용으로 하여 방문, 팩스,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시장은 시설사용 신청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시설 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사용자의 변상책임)** 사용자는 교통공원 시설의 사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.

**제9조(관리 및 운영)**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·단체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게 「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만료 3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3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수탁자는 교통공원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- 제10조(수탁자 의무)** ① 수탁자는 교통공원을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-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수탁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④ 수탁자는 교통공원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·양여·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, 시장의 승인 없이 교통공원의 관리·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
- 제11조(위탁의 해지)**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
1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  2.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  3.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
  4. 수탁자가 제10조를 위반하였을 경우

**제12조(자원봉사자)** 시장은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,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3조(준용)** 교통공원의 관리·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, 「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14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[관계법령]

### 지방자치법

[일부개정 2008.2.29 법률 제8852호]

**제104조(사무의 위임)**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, 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리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**제144조(공공시설)**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.

##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

[일부개정 2008.2.29 법률 제8852호]

제27조 (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당해 행정재산등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

③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, 관리위탁기간,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충당, 이용료의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,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[일부개정 2008.4.18 대통령령 제20772호]

제19조 (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)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을 관리위탁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당해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.

1. 천재·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을 운영하지 못한

경우

2.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

③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·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.

제96조 (조례의 제정·운영)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06.12.30>

## 교통안전법

[일부개정 2008.3.28 법률 제9071호]

제3조 (국가 등의 의무)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이하 "국가등"이라 한다)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·교육·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.

제23조 (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) ①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의 충실을 기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

## 제천시 공고 제 2008 - 1042

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8. 10 . 31.

제 천 시 장

###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
1. 조 례 명 :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#### 2. 제정이유

-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교통체험 교육을 통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#### 3. 주요내용

- 교통공원의 기능(안 제3조)
- 교통공원의 시설관리(안 제4조)
- 운영시간(안 제5조)
- 관리 및 운영(안 제9조)
- 위탁의 해지(안 제11조)

#### 4. 의견서 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08년 11월 20일까지 제천시장 (참조 교통과)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- ※ 연락처 641-5271, FAX 641-5299, 담당자 : 원 봉 희
-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), 전화번호, 주소
- 기타 참고 사항 등

★지방행정주사	교통지도팀장	교통과장			
원봉희	김효동	박성웅			

##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서

제천시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(안) 입법예고에 대하여 공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1. 입법예고 조례명 : 제천시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(안)
2. 공고번호 : 제천시공고 제2008-1042호
3. 공고기간 : 2008. 10. 31. ~ 11. 20.(20일)
4. 공고매체 : 제천시보 및 제천시홈페이지(입법예고)
5. 공고내용 : 별도붙임
6. 공고결과
  - 조회수 : 80명
  - 의견제시자 : 없음

붙 임 : 공고안 1부.(별지) 끝.